

2017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

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, 서로 존중·배려하는 성희롱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함.

1 추진 개요

관련근거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,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
-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
-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(여성정책담당관-8256호)

추진방향

-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는 내부 지침 및 매뉴얼 금년 내 완비
- 교육자료, 지침 등의 사내 게시 및 홍보를 통하여 사전 예방 도모
- 성희롱 고충사건 초기대응 및 사후관리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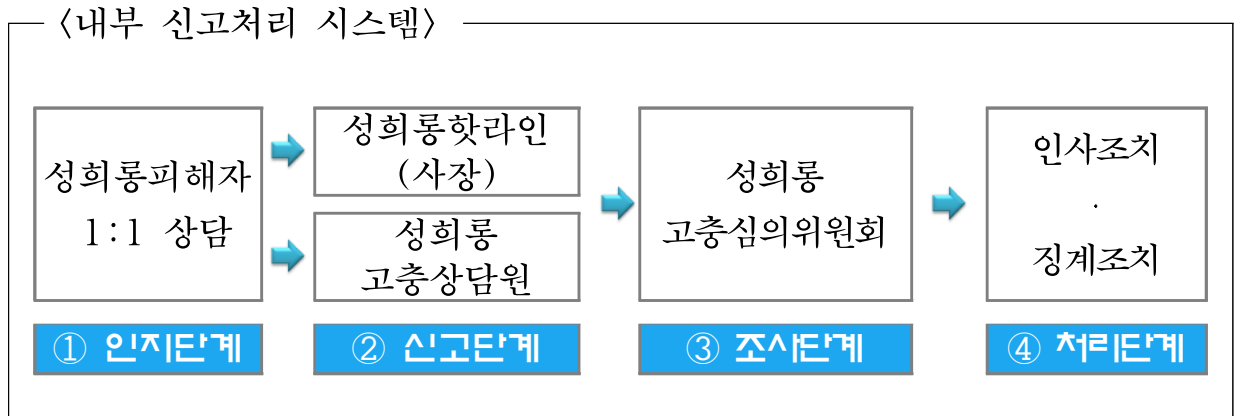
2 추진 계획

①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신설

- 성희롱 예방 지침 제정
 - 2017년 성희롱 예방지침 표준안(여성가족부) 및 관련 법령 사항 반영하여 공사 자체 지침 제정
- 사건처리 매뉴얼 수립
 - 서울시 및 공공기관 사건처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사건처리 시스템 및 세부절차 수립

2 성희롱 고충상담 공식창구 설치

- 사장 HOT LINE(공사 홈페이지 CEO Hot line) 도입
-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운영
 - 설치장소 : 서울에너지공사 인사노무부(☎02-2640-5184)
 - 운영방법 : 방문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등 이용
 - 기능 및 업무
 - ▶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 - ▶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의뢰, 부서간 협조·조정 에 관한 사항
 - ▶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- ▶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업무
- 내부 신고처리 시스템 구축



-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(3명)
 - (내부직원)남·녀 각 1명(인사 혹은 복무담당자, 노조원 등)
 - (외부전문가)성희롱외부전문가 1명 선정
 - 고충상담원은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 실시

3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
- 부장 이상 관리자층 대상 특별 교육 실시
 - 서울시 관리자 특별교육 참석 의무화(상·하반기 각 2회)
- 전 직원 대면교육 확대 : 2회(9월, 11월)
 -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

○ 온라인 교육 실시

- 교대근무직 등 대면 교육 참석이 어려운 직원 대상 온라인 과정 제공

4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실시

○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

-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공간 분리, 비밀엄수 등

○ 성희롱 예방교육 적극 참여 유도 및 자체 교육 실시

- 단체교육 미참석자에 대한 부서 자체교육 실시(교육자료 지원)

5 성희롱 가해자 무관용 인사원칙 확립

○ 가해자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, 인사 참고 자료로 전산관리 등

- 부서장·인사노무부 협의로 적기 추진

○ 성희롱 비위행위자 인사 시 반영 : 국외연수, 포상 등 인센티브 배제

6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

○ 가해자 의무교육

- 교육시기 : 사건 조사 결과 성희롱 해당 시, 의무교육
- 교육방법 : ‘면담→상담→교정’ 등 심리치유기법(외부전문기관 위탁)

○ 피해자 심리치유 및 종결상담

- 교육시기 : 피해자가 원할 경우, 원하는 시점
- 진행방법 : 심리치료 기법 제공(외부전문기관·전문가 배정)

○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예방 등 사후관리

- 점검기간 : 6개월마다 최소 2년(사건처리 종료 후), 필요 시 연장
- 점검방법 : 부서장(상담), 성희롱 고충상담원(유선 또는 메일)
- 점검내용 : 2차 가해 또는 동료 및 부서 내 갈등 여부, 심리상태 등

○ 피해자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

- 지원대상 : 피해자 요구 시(2차 피해 발생 또는 불공정 처리 호소 시)
- 지원내용 : 변호사 연계(한국성폭력위기센터(www.rape119.or.kr) 의뢰)

3

행정사항

향후일정

- '17.6월 : '서울에너지공사 성희롱 예방 지침' 제정
- '17.6월 :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수립
- '17.6월 : 성희롱 등 교육책자 및 웹파일 배포
- '17.7월 : 고충상담원 지정
- '17.9월 : 성희롱 등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

부서별 협조사항

- 전산정보부 : 사장 Hot Line 시스템 도입
 - 공사 홈페이지 CEO Hot Line 메뉴 중 성희롱 고충상담 추가. 끝.